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이용주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안 제6조~제7조)
-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공공시설 이용 배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본사업으로 출산장려·양육부담경감, 모자보건·건강증진 등 4가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양육부담 경감, 모자보건·건강증진, 가족친화활동, 일·가정양립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발전 및 출산 환경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또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
----------	----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일

발의자 : 이용주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13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8. ~ 11. 13.):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구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구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구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